

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15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

2. 개정이유

- 「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 개정에 따라 분장사무, 직급·직렬별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업무 전담 정원 별도 표기(안 제5조)
-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의 장(담당관 및 과장 포함) 및 사업소장의 직급 변경(안 별표1, 별표3)
- 부서별 사무분장표 변경(안 별표6)
 - 지방이양사무(행정지원과 → 자치협력과)
 - 「노동조합법」 개정에 따라 파주시를 계약외 사용자로 하는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등에 관한 사항 신설(기업지원과)
- 정원관리기관별 직급·직렬별 정원 변경(안 별표7)
 - 파주시 지방공무원 총정원 증가 (1,862명 → 1,898명 / +36명)
 - 직급 배정(6급 4명, 7급 10명, 8급 10명, 9급 12명)
 -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업무 전담 정원 지정 (26명)

4. 개정규칙안 : 별 첨

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의 입법예고란에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6월 4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 · 우편 · Fax 등

다. 기재내용 : 주소 · 성명 · 생년월일 · 연락 전화번호 · 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행정지원과 조직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(우 10932)

○ 전화 : 031)940-8604 / Fax 031)940-4109

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생 년 월 일 :
-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